

어 선 세 무 행 정 (V)

—어선피해와 조세지원—

수협중앙회 기획실
세무과장 고석환

1. 서 론

우리 인간은 자연의 무한한 문명 속에서 안락한 생활을 이루고 있지만 때로는 술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재난을 당하면서 공포와 불안에 시달려 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바다를 사업장으로 하는 수산업에 있어서는 해상위험에 뒤따르게 마련임으로 타사업에 비하여 위험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해상위험은 인명과 어선, 어구의 피해를 반드시 동반하게 마련입니다. 이처럼 무서운 해상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협공제나 각종 보험 등 사회보장제도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어선이 피해를 당했을 때 세계면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를 요약해서 설명하면.

첫째, 조세부과상의 지원으로,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부분이 전체사업용 자산(어선등)의 일정율이 상일 경우에는 이미 과세받았으면서도 아직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소득세나 법인세는 물론 재해를 입은 당해년도(사업년도) 과세소득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로서 피해입은 현재까지 아직 과세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도 그 상실비율에 따라 세액공제(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세법에서는 「재해손실세액공제」라고 합니다.

둘째, 세금징수상의 지원으로 수산업자가 어선의 재해손실로 인하여 국세를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 또는 결정한 세액의 징수를 일정기간동안 유예(연기납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세법에서는 「징수유예」라고 합니다.

세째, 지방세의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2. 재해손실 세액공제(소득세, 법인세)

수산업자가 수산업을 경영하여 오던 중 재해를 심히 당하여 어선·어구등 사업용 자산과 기타 세법에서 규정하는 자산총액의 50/100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그가 납부할 전체세금중에서 재해로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소득세법에서는 「재해손실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이 세액공제제도는 수산업을 경영하는 수산업자등 모든 사업자가 천재·지변등의 재해로 인하여 불가항력으로 현저하게 자력(資力)을 상실함으로써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납세의무의 이행이 심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정부가 이를 세계면에서 구제하여 주는 방법으로 채택된 제도입니다.

가. 재해받은 사업용자산등의 범위

재해손실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으려면 재해를 받아 상실된 사업용자산등의 자산가액이 사업용자산등의 총자산액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의 사업용자산등의 총자산범위에는 다음의 것을 모두 포함시켜 말합니다.

첫째, 사업용자산(그러나 토지는 제외됩니다.) 수산업자의 사업용자산이란 어선·어구등을 말하는 것으로 어선은 다음표와 같이 수산업경영상 사업용자산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수산업자가 다른 사람의 자산을 상실하였을 때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수산업자 자신에게 있는 경우에는 당해 상실한 다른 사람의 자산도 상실자산가액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수산업 경영자산의 구성(수산청장 허가어업 평균)

구 분	고 정 자 산			유동 자산	계
	어선	기타유 형고정 자산	무형고 정자산		
금액(천원)	32,496	7,019	2,901	202	5,151 47,769
(구성비 %)	68.03	14.69	6.08	0.42	10.78 100.00

(수협중앙회 '81 어업경영조사 보고서)

셋째,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수산업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금액에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에 관련되는 예금·주식·기타 자산을 상실하여도 위의 자산속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실된 예금·주식등 유가증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거나 민사소송법상의 공시최고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로 회복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상실한 자산으로 취급될 수 없습니다.

나. 자산상실의 정도 및 자산가액의 계산.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수산업자가 해상피해 등으로 인하여 자산총액의 50/100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산상실 비율의 정도가 자산총액의 50/100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산의 가액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자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재해발생일 현재, 당해 수산업자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해로 인하여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자산의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관찰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식가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당해 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의 범위.

태풍피해 등 재해손실에 대하여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의 범위로는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 중에서 그 상실된 자산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한 전체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파세사업년도가 이미 오래

전에 지나간 것도 포함됩니다.) 이것은 그 재해 발생일 현재 이미 부과되었거나 곧 부과되어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서 그 납부기한이 아직 까지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물론 이미 부과되었거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소득세·법인세와 그 가산금의 미납세액까지도 세액공제대상의 세금에 포함됩니다.

둘째,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년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이것은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앞으로 부과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

소득세나 법인세는 그 이듬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그 이듬해 신고·납부하는 것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 재해손실 세액공제액의 계산요령.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의 계산은 그 공제받는 소득세의 구분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첫째, 재해발생일 현재의 미납부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산금 포함)의 경우에는 「수산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미납부세액(가산금 포함)×재해상실비율=재해손실 세액공제액」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둘째,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년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수산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재해손실 세액공제액 이외의 세액공제액+세액감면액)+가산세}×재해상실비율=재해손실 세액공제액」

문제는 위의 산식에서 표시된 「재해상실비율」의 계산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 소득세법상 또는 법인세법상에 규정된 「재해상실비율」은 다음 산식에 의합니다. 즉

$$\frac{\text{상실 자산가액}}{\text{상실전 자산가액}} = \text{재해상실비율}$$

여기서 상실전 자산가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에 관련되는 예금·주식·기타자산의 가액은 그 소득금액을 당해 예금등의 연이자율(또는 주식등의 연배당율)로 나눈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회세기간중에 2회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재해상실비율을 계산합니다.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가액의 합계액
최초재해전 자산가액 + 최종재해전까지의 증가된 자

산가액 = 재해상실비율

마. 재해손실세액공제의 신청

(1) 개인업자의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는 피해를 입은 수산업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혜택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주소지판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정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그후 얼마의 기간이 지나게 되면 세무당국에서는 재해손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일단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신청을 할 경우에는 세무당국은 반드시 그 공제할 세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집단적인 피해손실이 있었을 때의 신청여부입니다. 세법에서는 이에 대한 특례로서 재해가 집단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개개인의 신청여부에 불구하고 세무당국이 조사·결정한 자산상실비율에 따라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세무서장이 집단적으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한고자 할 때에는 집단재해지역의 자산상실비율을 조사하여 소관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의 경우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개인의 경우와 달리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는 신청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3항 및 동시행령 제80조의 2에서는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그 재해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이상 위에서 열거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고자 할 때 공제받을 법인세에 대하여 당해 세액공제가 확정될 때까지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세의 징수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징수유예에 관하여는 다음 장에서 별도 설명코자 합니다.)

3. 징수유예

수산업자가 태풍피해등으로 인하여 어선의 파괴등 재해를 입었으나 그 재해상실비율이 앞의 세액공제요건에서 말한 바와 같이 50%를 초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피해상실비율이 50%는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당시의 사정에 의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의 혜택을 못받은 경우는 물론, 기타의 수산업자 개개의 개별적인 특수사정에 의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일반적인 납부기한내에 국세채무의 이행이 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그 이행기한을 늦추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세법에서는 「징수유예」라고 합니다.

가. 징수유예의 요건

징수유예는 국세납부를 이행하여야 할 시점에 있어 동국세를 납부할 수산업자에게 다음에 계기하는 것중 그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동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정상적인 기한내에 도저히 납부할 수 없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인 수산업자가 국세징수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를 당해 세무서에 제공함으로써 당해 납세고지를 유예하거나 분할하여 고지를 받을 수 있고 또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한 국세에 대하여는 별도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유예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인하여 재난에 심한 손해를 받았을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았을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4) 수산업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으로 장기간 치료를 요할 때

(5) (1) 내지 (4) 사유에 충하는 사유가 있을 때

나. 징수유예의 절차

(1) 징수유예의 신청

징수유예의 요건을 갖춘 납세자가 있다 하더라도 세무당국은 납세자 개개인의 개별적인 사정을 일일이 알 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징수유예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기간, 납부방법 및 담보내용

등 소정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징수유예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세무서장의 징수유예 결정 및 통지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징수유예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조사한 후 가부(可否)를 결정하여야 하는 바, 징수유예를 해주기로 결정한 때에는 유예기간·분납금액·납부기한·납부장소·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징수유예통지서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징수유예통지서를 발부한 날을 징수유예신청에 관계되는 국세에 대한 징수유예를 한 날로 간주하게 됩니다.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내로 하고 그 기간중의 분납기한과 금액은 세무서장이 당시의 상황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사업에 협저한 손실을 받았을 때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징수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을 유예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9월이내로 하고 그 분납기한과 금액은 징수유예기간 개시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분납하도록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습니다.

(3) 징수유예의 방법

징수유예는 앞에서도 말하였지만 다음과 같이 네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고지의 유예, 즉 결정한 세액에 대한 고지서발부를 뒤로 미루어 유예받는 방법

둘째, 분활고지, 즉 결정한 세액을 여러번 분활하여 고지받는 방법

세째, 납부기한의 연장, 즉 이미 고지받은 국세에 대한 납부기한을 연장받아 다시 정하는 방법

네째, 독촉기한의 연장, 즉 독촉한 국세·가산금에 대한 납부기한을 연장받아 다시 정하는 방법

다. 징수유예에 필요한 담보의 제공

(1) 담보의 종류

세무당국은 그 국세의 채권확보를 위해서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게 됩니다. 국세에 관한 담보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징수유예에 관한 담

보로 제공할 수 있는 담보의 종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금전

둘째, 국채 또는 지방채

세째,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네째, 납세보증보험증권

다섯째,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여섯째, 토지

일곱째, 보험에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 항공기나 증기

(2) 담보물의 평가방법

이렇게 제공된 담보물은 그 가액이 국세채권에 상당한 것이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담보물의 가액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0조에 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① 국채 또는 지방채는 첫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② 유가증권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며

③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금액에 의합니다.

④ 그리고 납세보증서는 보증액에 의하여 평가하고

⑤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증기는 지방세법에 의한 첫가표준액 또는 감정기관이나 그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전문적 기술을 보유하는 자의 평가액에 의합니다.

라. 징수유예의 효과

(1) 특축 및 체납처분금지의 효과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에는 다음과 같이 특축이나 체납처분을 받지 않음을니다.

첫째, 납세의 고지가 된 국세를 납부기한내에 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에 대한 가산금의 납부나 특축을 받지 아니합니다.

둘째, 특축이 된 체납액을 유예받은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한 처분을 받지 아니합니다.

(2) 시효정지의 효과

징수유예기간중에는 그 유예에 관계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정부의 독촉 또는 체납처분이 금지되어 있어 정부가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써 그 시효는 자연 정지되는 것입니다.

4. 지방세의 감면

가. 자력상실에 의한 취득세 감면

수산업자가 천재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현저히 자력을 상실함으로써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당해 도의회의 의결(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23조 및 동시행령 제187조)

나. 그러나 태풍피해로 인하여 어선을 잃은 후 그후 이를 복구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현행 지방세법 제108조 제5호에서는 재해전 축물을 다시 건조할 때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해복구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비과세규정이 없습니다. 이것은 동일 취득세 과세물건에 대하여 조세형평을 상실한 것이며, 더욱이 태풍 등으로 인한 선박의 멸실은 당해 선박뿐만 아니라 인명·어업기자재등의 피해도 극심하므로써 선박의 재건조치에는 조세정책면에서의 지원이 극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수협중앙회는 재해복구선박에 대하여도 취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82년 9월 22일 내무부에 지방세법 개정의를 한 바 있고 내무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추후 지방세법 개정시 참고하겠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本會業務에 관한 建議事項은

會長室 676-1236

常任監事室 676-6782

監查室 676-3827

韓國漁船協會